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박기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 박기열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권영희, 김경영,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재, 박상구,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이성배,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최 선,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29
명)

1. 제안이유

-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고유식별정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의 확인서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11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생년월일(10개 광역자치) 또는 차량번호만(1개 광역자치)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확인서 갑지 및 을지의 소유자란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운전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함.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확인서 갑지 및 을지의 소유자란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운전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서식]					[별지 서식]				
<u>확 인 서</u>					<u>확 인 서</u>				
(갑) (행정기관 보관용)					(갑) (행정기관 보관용)				
자동차등록번호					차명(인증번호)				
차량총중량(kg)		배기량(cc)		형식 및 년식					
소유자	성명(상호)	<u>주민(사업자)등록번호</u>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운전자	성명	<u>주민등록번호</u>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u>확 인 서</u>					<u>확 인 서</u>				
(을) (운전자 보관용)					(을) (운전자 보관용)				
자동차등록번호					차명(인증번호)				
차량총중량(kg)		배기량(cc)		형식 및 년식					
소유자	성명(상호)	<u>주민(사업자)등록번호</u>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운전자	성명	<u>주민등록번호</u>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